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7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11257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의 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진규, 신예찬
피 고 파주시장
변 론 종 결 2024. 9. 24.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1.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배기가스 배출설비 취득세 691,532,483원, 지방교육세 39,516,142원, 농어촌특별세 49,395,17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복합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구조

1) 원고는 2011. 6. 21. 발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B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등을 통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2) 이 사건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의 발전 공정, 즉 ① 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를 연소·폭발시킬 때 발생한 압력을 이용하여 가스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1차 전기 생산), ② 천연가스 연소·폭발을 통해 가스터빈을 회전시킨 후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로 배열회수보일러(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HRSG', 이하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라 한다)를 통해 발전용수를 가열하여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산하는 단계, ③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온·고압의 증기로 증기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2차 전기 생산), ④ 증기터빈을 통과한 저온·저압의 증기를 복수기(Condenser)에서 냉각하여 발전용수로 환원하는 단계, ⑤ 환원된 발전용수를 다시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로 순환시켜 전기 생산에 재활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나.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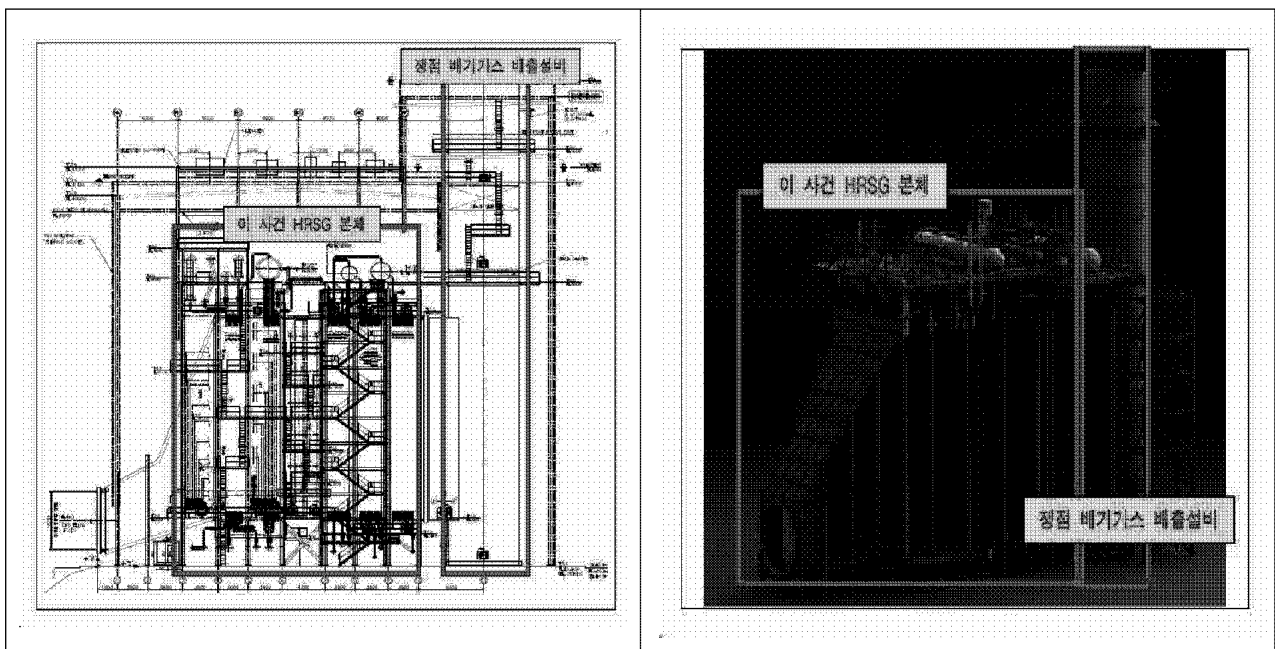
1)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는 발전용수 및 증기를 가열하거나 분리하는 본체 부분(이하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라 한다)과 발전용수를 가열한 후 온도가 내려간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설비(이하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라 한다)로 구성된다.

2) 구체적으로 보면, 가스터빈을 통해 1차 전기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온



의 배기가스가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로 회수되고,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에서는 고온의 배기가스로 발전용수를 가열하여 고온·고압의 증기를 생성한다. 발전용수 가열에 사용된 고온의 배기가스는 이 과정에서 온도가 내려가고, 열을 빼앗긴 배기가스는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를 통해 대기로 배출된다.

3)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의 도면 및 모형 사진은 아래 그림과 같다.



다. 취득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발전소 및 관련 발전설비가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 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가 정한 '건축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2016. 6. 10.부터 2017. 8. 24.까지 취득세 8,484,323,980원, 농어촌특별세 733,664,210원, 지방교육세 235,748,800원 합계 9,453,736,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2021.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설비(정압기, 가스압축기, 가스터빈용 시설, 수처리 설비, 냉각탑,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¹⁾), 교량(C천 진입교량, 발전소 내부 교량), 도로·울타리·예비자산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21. 4. 19. 정압기, 가스압축기, 가스터빈용 시설, 수처리 설비, 냉각탑, C천 진입교량에 대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 발전소 내부 교량, 도로·울타리·예비자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21. 7. 2.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 발전소 내부교량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발전소 내부 교량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이하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

1)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에 대해서는 원고가 처음부터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그런데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발전 생산설비인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에 부속 내지 부합된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아니고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건축물인 이 사건 발전소 건물과 하나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바, 이 사건 발전소 건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딸린) 시설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건축설비 중 하나인 '굴뚝'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호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을 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기타 유사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을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²⁾ 또는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라 정의하고 있다.

2) 종래 건축법상 '부수되는 시설물'이라 규정하였다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2008. 3. 21. 법률 제 8974호로 개정된 건축법에서 '이에 딸린 시설물'로 변경되었다.



나)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이에 딸린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은 당해 건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특정 시설이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건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다면, 건물에 부합되거나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 볼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두160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이 사건 발전소 건물에 부합되거나 이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와 일체로 설계되었고 실제 시공상으로도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장치로 연결되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가 이 사건 발전소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발전소의 특성상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배열회수보일러를 건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일 뿐, 배열회수보일러가 건물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안가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 여지가 적은 D발전소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배열회수보일러를 건물 외벽 없이 독립적으로 설치하였다.

이 사건 발전소 배열회수보일러 설치 현황 및 모형	D발전소 배열회수보일러 설치 현황
	

나)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발전설비인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는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 본체와 일체를 이루어 발전설비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건 발전소 건물 자체의 기능적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다목은 '개수'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호, 제7호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의 예시로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건물의 냉난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들고 있다. 이는 건물의 온수 공급 및 난방 목적으로 기능하므로 건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로서 건물에 딸린 시설물이라 할 수 있고, 해당 시설에 가스 등을 배출하기 위한 배출시설(굴뚝 등)이 부착되어 있다면, 이 또한 건물에 딸린 시설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전소에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보일러' 시설이 별도로 존재하고(원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갑 제18호증의 1),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는 보조보일러와 용도·기능면에서 명백히 구분된다.

라)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배열회수보일러를 건물로 둘러싸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는 이 사건 발전소 건물과 독립하여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마) 구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규정을 들어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은 부대설비가 건물 주체구조부에 부합되어 하나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배열회수보일러가 이 사건 발전소 건물에 부합되어 하나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바)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을 '건축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이 사건 발전소 건물에 설치하는 굴뚝으로서 건축설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발전소 건물의 부속시설로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779 판결 등 참조), ①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서의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하고 있을 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건축법은 건축물(제2조 제1항 제2호)과 건축설비(제2조 제1항 제4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고, 법적 규율 또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 배기가스 배출설비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건축설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우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27

판사 김성겸

판사 김시원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



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



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냉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